

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8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6. 8. 16

다. 상정일자 : 2006. 8. 30

(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 명문화하여 개발행위허가(제56조 관련)기준을 마련하고,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, 군 관리계획입안시 지정되는 시가화 조정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,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개발행위허가기준(제56조관련)규정에 의한 산림내 개발행위허가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의 기준설정 및 상·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의 허가기준마련(조례 제20조, 제21조)
-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를 당초 1천제곱미터에서 2천제곱미터로 부과 1천세제곱미터를 2천세제곱미터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 1천제곱미터에서 2천제곱미터로 조정.
(조례 제28조)
-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거부할 수 없는 행위 마련(조례 제31조)
- 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조례 제78조, 제79조)

-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7678호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훈)

-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을 명문화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,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,
- 시가화 조정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거부할 수 없는 행위와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
-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붙임 :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